
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 결정 관련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

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, 가입자 별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신고(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) 자료를 일괄 입수하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으며, 결정된 내용은 전체 사업장으로 통지·안내하는 등 간편한 업무 절차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, 연말정산 신고 시 **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“급여총액, 근로기간” 항목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연계 방법 등을 아래 사례로 안내하오니,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

1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주요 내용

◆ **기준소득월액 결정 산정식 = 2021년 귀속 소득총액 ÷ 2021년 총 근무일수 × 30 (천원 미만 절사)**

① **소득총액** =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주(현)사업장의 ⑯번 항목 소득 계 + 일부 비과세 소득*

* 국민연금 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소득 [주식매수선택권, 우리사주조합인출금,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소득,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향해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(월 300만원 이내) 등]

② **총 근무일수** =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주(현)사업장의 ⑪번 항목 근무기간

③ **정기결정 적용기간** =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



2. 2021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연계 예시

Q. ‘21.2.28. “나라기업”을 퇴사하여, ‘21.3.1. “우리기업”에 입사한 근로자 “김국민”의 기준소득월액은?

연말정산 신고내역

2021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				
구 분	주(현)	종(전)	종(전)	납세조합	합계
⑨ 근무처명	우리기업	나라기업			
⑩ 사업자등록번호					
⑪ 근무기간	2021.3.1. ~ 2021.12.31.	2021.1.1. ~ 2021.2.28.			
⑫ ~ ⑯ 계	~ ~	~ ~			23,600,000
⑯ 계	20,000,000	3,600,000			
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역

국민연금 신고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연계 결과
① 소득총액	⑯번 계	20,000,000원
② 총 근무일수	⑪번 근무기간	306 일 = 2021.3.1. 부터 12.31.
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	1,960,000 $= 20,000,000 \div 306\text{일} \times 30$ (단, 천원미만 절사)	

◆ 착오신고 사례

① 주(현) 근무기간 착오 기재

주(현) 우리기업의 “⑪ 근무기간” 항목에 퇴사한 “나라기업”과 합산하여 “2021.1.1. ~ 2021.12.31.”로 착오 신고

☞ 정확한 근무기간 신고는 “2021.3.1. ~ 2021.12.31.”입니다.

② 주(현) 소득금액 계 착오 기재

주(현) 우리기업의 “⑯번 계” 항목에 총소득을 퇴사한 “나라기업”과 합산하여 “23,600,000” 소득금액 착오 신고

☞ 정확한 소득금액 계 신고는 “20,000,000”입니다.

▣ 위의 착오신고 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“1,960,000”이 “1,939,000”으로 하향되어 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.

☞ 착오 결정 예시 $1,939,000 = 23,600,000 \text{ (소득합산)} \div 365 \text{ (일수 합산)} \times 30 \text{ (단, 천원 미만 절사)}$



3. 착오신고 주요 사례 (꼭 읽어보세요!!)

1. 연도 중에 중간 입사한 근로자의 “근무기간”을 “2021.1.1. ~ 12.31.(365일)”로 착오 신고

◆ 예시 : 2021.7.1. 입사하고(총근무일수 184일), 급여총액이 1천만원인 근로자

▶ 정확한 기준소득월액 : 1,630,000원 ($10,000,000 \div 184\text{일} \times 30$)

▶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: 821,000원 ($10,000,000 \div 365\text{일} \times 30$)으로 하향됨

2. 2021년 12월 급여를 2022년 1월에 실제 지급하여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(현) 사업장의 “(16번 계 급여총액”란에 12월분을 포함하지 않고 착오 신고

◆ 예시 : 2021.11.1. 입사하고, 11월분 급여 100만원은 12월에 지급, 12월분 급여 100만원은 22년 1월에 지급

▶ 정확한 기준소득월액 : 983,000원 ($2,000,000\text{원} \div 61\text{일} \times 30$)

▶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: 491,000원 ($1,000,000\text{원} \div 61\text{일} \times 30$)

※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: 근로소득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(12월분 급여의 실제 지급시기가 22년도 1월인 경우에도, 해당 급여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)

3. 동일 사업장에 퇴사한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급여총액을 합산하여 착오 신고

◆ 예시 : 동일한 사업장을 2021.4.30. 퇴사(급여총액: 400만원) 후 2021.9.1. 재입사한 근로자(급여총액: 500만원)

신고내용	정확한 신고		착오 신고	
근무기간	주(현)	종(전)	주(현)	종(전)
(11번 근무기간 항목)	9.1.~12.31.(122일)	1.1.~4.30.	1.1.~12.31.(365일)	미기재
소득총액(16번 계 항목)	5,000,000	4,000,000	9,000,000	미기재
기준소득월액	1,229,000 ($5,000,000 \div 122 \times 30$)		739,000 ($9,000,000 \div 365 \times 30$)	

4. 2021년도 중 휴직기간이 있는 가입자는 소득총액 신고기간(5월)에 반드시 정정 신고 필요

◆ 예시 : 2021년 총 지급액 3,000만원, 8월 ~ 9월 2개월간 휴직(휴직기간 중 일부 소득 발생 : 100만원)

▶ 정확한 기준소득월액 : 2,861,000원 ($29,000,000\text{원} \div 304\text{일} \times 30$)

▶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: 2,465,000원 ($30,000,000\text{원} \div 365\text{일} \times 30$)

※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은 정상 근로기간과 그 급여로 결정되므로, 휴직일수와 동 기간에 발생한 휴직 급여는 제외하여 결정됨. 따라서 휴직자는 반드시 소득총액 신고기간(5월경 안내)에 과세총액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재확인하여 정정 신고해야 함



4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업무 추진 일정

- ①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하여 신고대상 선별 : 4월 초경
- ②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소득자료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소득총액신고서 제출 : 5월 말경
- ③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대상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내용 조회서비스 실시(공단 홈페이지, EDI 조회) : 6월 초경
⇒ 사업장은 과세소득에 맞게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만 정정신고
- ④ 2021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사업장 발송 : 6월 중순경

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터 및 국민연금 관할지사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